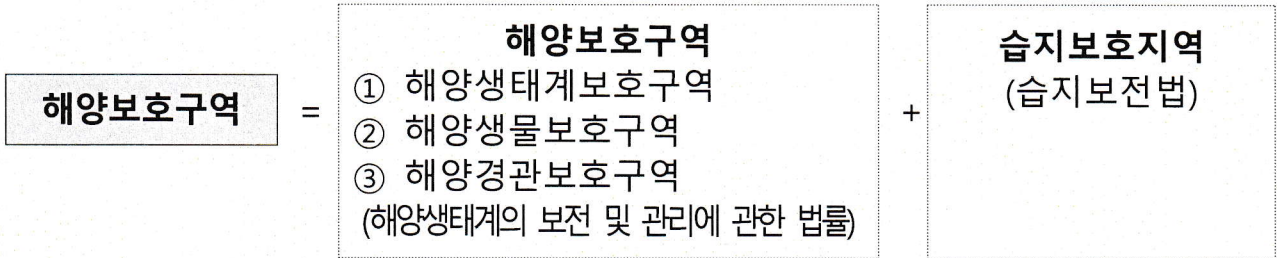


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자료

□ 해양보호구역이란?

- 바다(해양) 중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연안습지(갯벌) 보호지역(습지보전법) 및 해양보호구역(해양생태계법)으로 지정된 곳을 통칭



□ 지정 절차(습지보전법 제8조)

- (지정권자) 해수부 장관, 시도지사
- (지정대상)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, 특이한 지질학적 가치 등을 지녀 특별히 보전 가치 있는 해역을 지정
- (지정절차) 시·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확정·고시

□ 행위제한(습지보전법 제13조)

제한 행위	행위제한 적용제외	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시 적용 제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축물, 인공 구조물의 신축·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* 증축은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▶ 습지의 수위, 수량 증가, 수량 감소행위 ▶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 채취, 광물채굴 ▶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·포획·채취하는 행위(해당 지역 주민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)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·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농업목적 사용 ▶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7조의 응급조치 ▶ 「하천법」의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 공사 및 유지·보수 사업 ▶ 군병력 투입 등 군사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자연재해 예방·복구·구호 등 활동 ▶ 습지보호지역 보전 또는 농림수산업 영위에 필요한 경우 ▶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* 군작전 대규모 국책사업 인명 재산피해 방지

□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(안)

-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조사(‘23.7.~8./해양환경공단)

<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>

- 1) 대형저서동물: 법정보호종(갯게, 흰발농게, 대추귀고둥 등) 서식
- 2) 해안식생분포 면적: 0.62km² (기준치 0.01km² 이상)
- 3) 물새류: 해양보호생물(검은머리갈매기, 알락꼬리마도요, 저어새, 노랑부리백로) 서식

☞ 법정보호종(대형저서동물, 물새류), 해안식생 서식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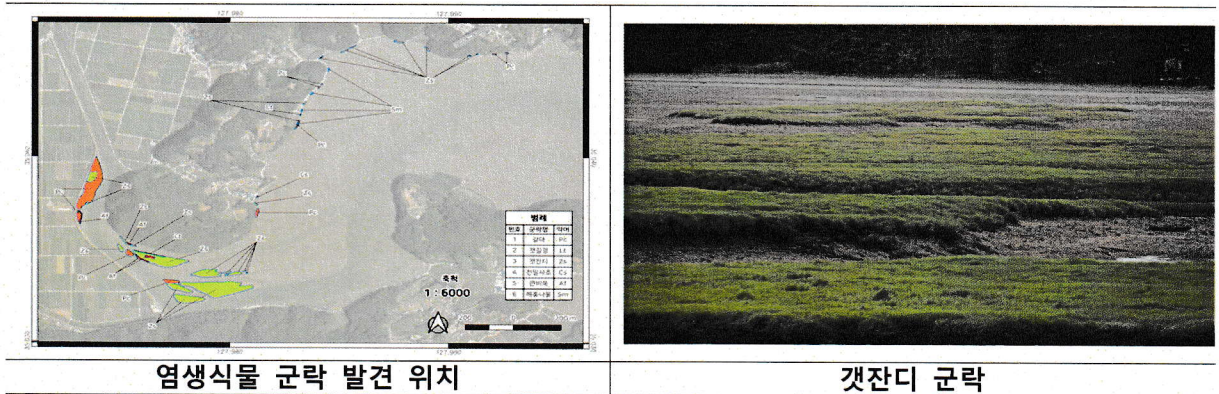
- (지정위치) 경상남도 사천시 광포만 주변지역 갯벌
- (지정면적) 약 3.46km²
- (지정목적) 넓은 염생식물 군락 및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사천 광포만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
- (생태계 현황)
 - (대형저서동물) 해양보호생물 갯게(2,480개체 이상), 흰발농게(330,344개체 이상), 대추귀고둥(74,600개체 이상) 등 서식

		
흰발농게	갯게(국내 최대개체수)	대추귀고둥(국내 최대개체수)
33.7개체/m ² 분포면적 9,800m ² 총 330,334개체 서식 추정	2개체/m ² 분포면적 1,240m ² 총 2,480개체 서식 추정	6.91개체/m ² 분포면적 10,700m ² 총 74,600개체 서식 추정

- (바닷새) 법정보호종 검은머리갈매기(멸종위기 2급, 해양보호생물), 알락꼬리마도요(멸종위기 2급, 해양보호생물), 저어새(멸종위기 1급, 해양보호생물), 노랑부리백로(멸종위기 1급, 해양보호생물) 서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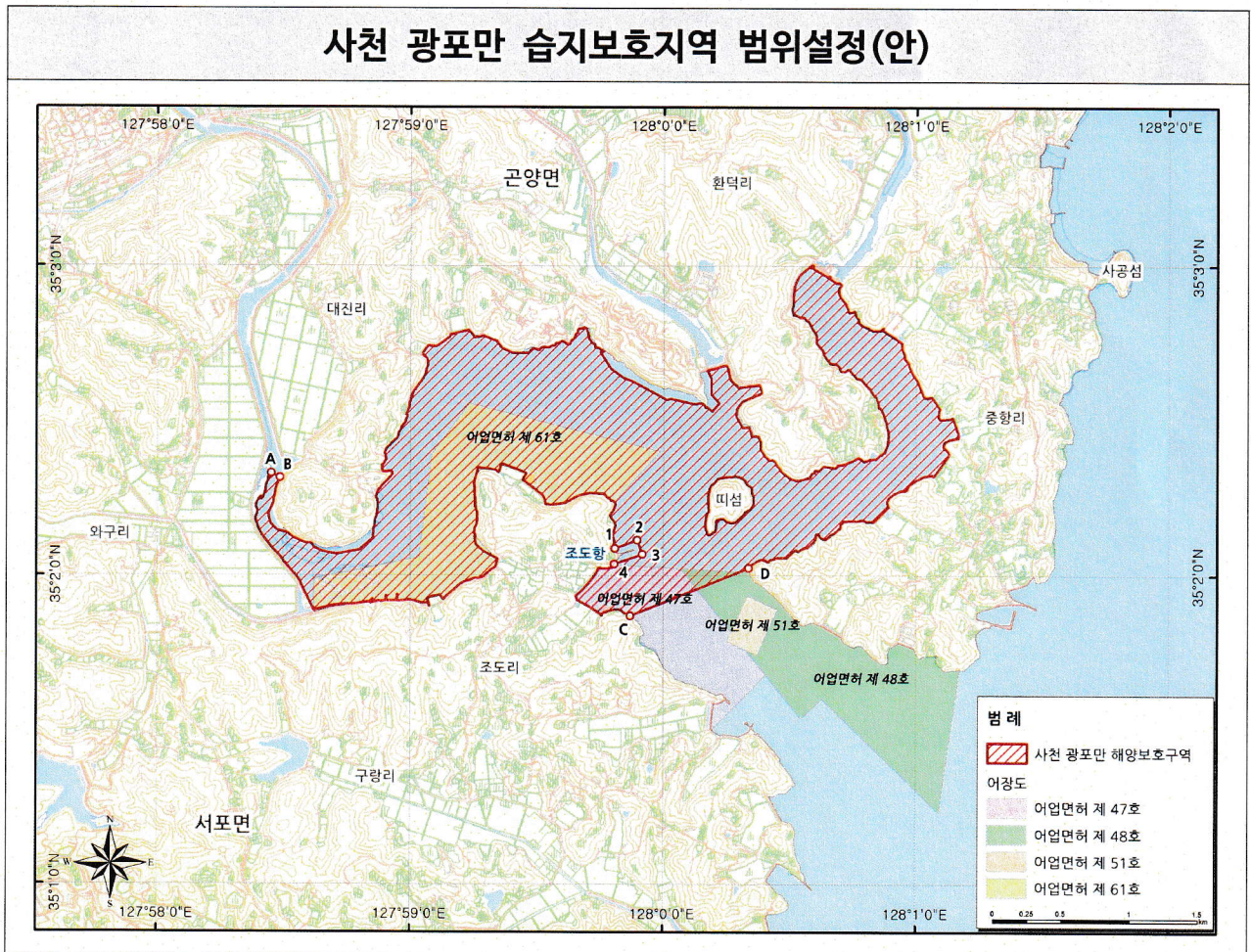
			
검은머리갈매기	알락꼬리마도요	노랑부리백로	저어새
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2급	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2급	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1급	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1급

- (염생식물) 갯잔디 군락 총 62,264m²로 국내 최대 면적 분포, 습지 보호지역 지정기준(0.01km² 이상) 부합



- (지정범위) '23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해양생태계 조사 정점 범위를 포함하여 보호지역 범위 지정

* (습지보호지역 내 행정구역) 곤양면, 서포면 총 2개면



* 습지보호지역 대상지 내 국가 어항(조도항: 0.12km) 구역 제외

□ 보전·이용방안

- (보전계획)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수립·시행(지방청)
 - (조사·관찰) 습지보호지역과 인근 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(해양환경공단)
 - (환경개선) 불법행위 감시, 갯벌복원, 해양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(지자체)
 - (이용기반) 지속적 습지보전을 위한 습지보전·이용 시설 설치·운영(지자체)
 - (주민지원) 교육 및 인식증진, 치어·종패 방류,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(지자체)
 - (생태관광) 방문객센터,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습지생태관광 활성화 도모(지자체)
 - (일자리 창출)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, 갯벌생태해설사 등 위촉(지자체)
- * 해양보호구역(습지보호지역 포함) 보전·관리 지도·계몽 활동, 불법행위 감시 등

□ 향후계획

-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계부처 의견 조회(9~11월)
-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·고시(12월 말)

참고 1

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

지정항목	세부기준
지형·지질 및 경관 특이성	① 지형·지질이 매우 전형적이거나 특이하며 학술적·미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, <u>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</u> ② 훼손되지 않은 해안사구와 연안습지의 연속성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연안습지의 배후에 해안절벽과 시스택 등 <u>원시적인 해안 경관</u> 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③ 자연 및 인문 경관의 미적 가치가 뛰어나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과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고양과 복지 증진에 <u>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</u>
대형저서동물	① 단위갯벌에서 <u>출현종수가 100종을 넘거나 법적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</u> ② <u>국내에서만 출현하는 종, 희귀종 혹은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</u> ③ 종다양도 등 <u>지수생태가 다른 단위갯벌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</u>
해안식생 및 식물상	① <u>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</u> ② <u>해안식생의 분포 면적이 0.01km² 이상</u> 이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 ③ 「자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<u>녹지자연도에서 10등급(사구식생, 염소지식생)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</u>
물새류	① <u>법적보호종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</u> 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② <u>2만 개체 이상의 물새가 출현하는 지역</u> ③ 물새 한 종의 <u>전 세계 개체수의 1% 이상</u> 이 서식하거나 이용하는 지역
기타분류군	① 위 분야 외의 어류나 양서류, 파충류, 포유류 중 <u>법적보호종이 서식하거나 출현하며 해당생물의 생활사에 해당 연안습지가 중요한 역할</u> 을 하는 지역

참고 2

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절차(안)

사전 준비 단계	습지보호지역 후보지 추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적합성 확인 ◆ 지자체 지정 요청
	대상지역 정밀조사 (필요시 별도조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부합 여부 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 * 기존 조사자료 활용 가능
지정 준비 단계	지정계획(안)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양수산부(시·도지사)
	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경남도, 사천시 의견수렴 ◆ 주민설명회 개최
	관계 중앙부처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환경부, 국방부, 국토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
지정	습지보호지역 지정·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수부 장관 방침 및 관보 게재
	관련 정보시스템 게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수부*, 관련 지자체 누리집 게시 * 해양환경정보포털

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(34개소, 1,861.922km²)

